

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일비”를 “수당”으로 한다.

제2조중 “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”를 “조례·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수당)①각종 위원회(사이버 위원회를 포함한다)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은 직접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

②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일비 및 여비(이하 “실비변상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수당 </p>
<p>제2조(적용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.</p>	<p>제2조(적용) 조례·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.....</p>
<p>제3조(일비 등) ①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② 도 소속직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 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수당) ① 각종 위원회(사이버위원회를 포함한다)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 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
관 계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) :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

⑨ 위원회 참석수당

- ① 경비성격 : 법령·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
- ② 기준 액(p 77)

구 분	단 위	단 가	비 고
위원회 참석비	일 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본료 : 70,000원 · 초 과 : 30,0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·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1회에 한하여 지급
사이버 위원회 참석비	일 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본료 : 50,000원 · 초 과 : 20,0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·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1회에 한하여 지급

□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

마. 목과 구분과 설정(p 160)

목번호	목구분	설정
201	일반운영비	<p>4. 운영수당</p> <p>가. 위원회참석수당</p> <p>1) 법령,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</p> <p>2) 법령,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</p> <p>3) 교통비,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계상 가능</p> <p>나. 심사수당</p> <p>- 법령·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) 지방세이의신청심의, 투·융자심사 등</p>

□ 행정심판법시행령

제7조 (위원의 신분보장등) ① 위원은 급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재결청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위원회(소위원회를 포함한다)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, 안건검토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.
<개정 1999. 3. 26>